충청북도 조례 제4171호에 의한 위탁사무임

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

㉾ 2844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(송정동) / 전화 043)265-0913 / 전송 043)265-0922
관리국 / 국장 허창원 / 부장 배기호 / 담당자 : 과장 이종덕(jongdeok.lee@cjsandan.net)

문서번호 청관공 제2023-**202**호
시행일자 2023. 05. 17. ( )
수 신 입 주 업 체 장
(경 유)
제 목 **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준수 안내**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,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위반하여 공장시설 용도의 산업용지를 공장 외의 시설(해당공장 생산제품 외의 판매장, 타 업체 보관창고, 불법전시장 등)로 활용하거나,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신고 없이 공장을 임의로 가동중지 하거나, 제조시설을 임의로 철거·이전하고 임대업만 영위하는 등 불법사례들이 종종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3. 한편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) 제38조에 의하면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4. 입주업체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입주업체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(취득가격 + 소정의 이자 + 제세공과)으로 관리기관 또는 다른 기업에 양도 의무가 발생(미이행시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)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아울러, 2023년 6월 중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위와 같은 유사사례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"청주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" 고시문 등 주요내용은 공단 홈페이지(www.cjsandan.net) "자료실"에서 다운로드 가능. 끝.

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 사 장